

1.사업의 목적

Art Smoking Booth

사업의 목적

- ✓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
- ✓혐오시설인 흡연부스의 예술적 승화
- ✓장애인, 생계곤란 유공자의 일자리 창출

기본방안

- ✓최적의 ventilation system
- ✓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물
- ✓ 공공미술 예술 건축물
- ✓광고수익을 이용한 자생적 인 시설물 관리

2. Art Smoking Booth 사업의 효과

Art Smoking Booth Smoking Booth Smoking Booth

- >국민 10명 중 6명이 공공장소에서 간접흡 연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있다.
- ➤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호 할 수 있다.
- >지방자치단체의 조 례계정과 공공장소 의 금역구역 지정으 로 흡연자의 흡연 권 리보호를 할 수있다.
- ➤ 협오시설인 흡연부 스의 예술적 건축물 로 승화 함

- ▶ 장애인및 생계곤 란 국가유공자들 의 취업으로 일자리창출 효과
- ► 친환경적인 배기시 스템으로 저비용 고 효율를 얻을 수 있다.
- ▶철저하고 청결한 유지보수 관리로 쾌적한 흡연부스조 성하여 길거리 흡연 인구를 유도할수있 다
- ▶길거리 흡연인구의 감소로 쾌적한도심 거리 조성에 이바지.

3.Art Smoking Booth 기본 방안



장애인/생계곤란 유공자 일자리 창출

자연 ventilation system 관리용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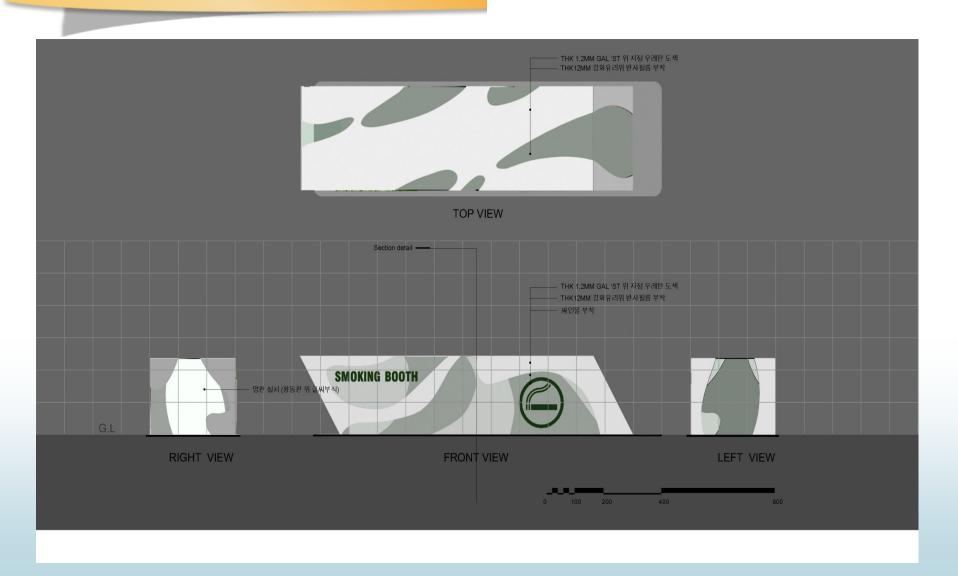
혐오시설 인 흡연부스 예술적 승회

간접흡연 방지로 비흡연자 혐연권 보장

4.Art Smoking Booth 조감도 A



5.Art Smoking Booth 입면도 A



6.Art Smoking Booth 조감도 B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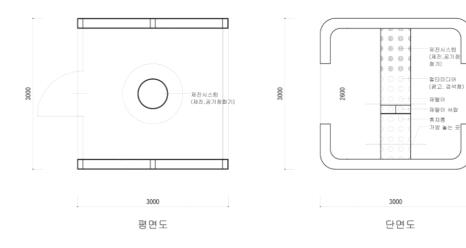
7.Art Smoking Booth 입면도 B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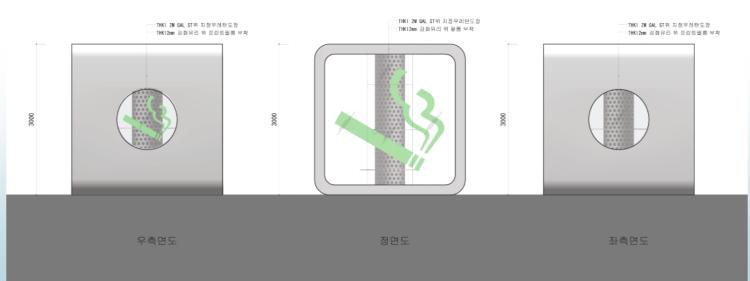


8.Art Smoking Booth 조감도 C



9.Art Smoking Booth 입면도 C





10.Art Smoking Booth 필요성

●국민건강증진법 의 금연의 강조됨에 따라 금연구역 증가확대 에 비해 흡연부스 는 턱없이 부족한 실태입니다. 길거리로 내몰린 흡연자 의 권리보장.

(단위: 개소, 2010. 12.31기준)

계	의료기 관	보건소 등	초중고 교	보육시 설	사무용 건축물	복합 건축물	공장	공연장	학원	대규모 상점가	지하 상점가
	56,169	2,440	11,587	29,526	15,300	50,080	33,582	550	3,348	1,212	466
340,638	관광 숙박업 소	대학교	체육 시설	사회복 지시설	교통관 련시설	목욕장	전자 오락실	PC방	만화방	음식점	청사
	1,858	432	1,164	6,683	4,824	8,593	3,396	21,570	1,033	78,731	8,094

※ 자료원: 금연클리닉정보시스템(보건소 보고기준)

11.Smoking Booth 설치운영안

설치 위치

• 대형소핑몰 및 지하철,전철역사 유동인구 밀집지역

2 설치 수량 및 비용

• (1기당 @₩35,000,000)

🧣 설치 조건

가. 설치비용 : ㈜ 회사 전액 부담하며, 디스플레이 면을 이용, 광고주를 유치하여 비용조달

나. 시설 관리 운영비 : 기본 시설에 대한 비용은 광고주의 광고료 를 받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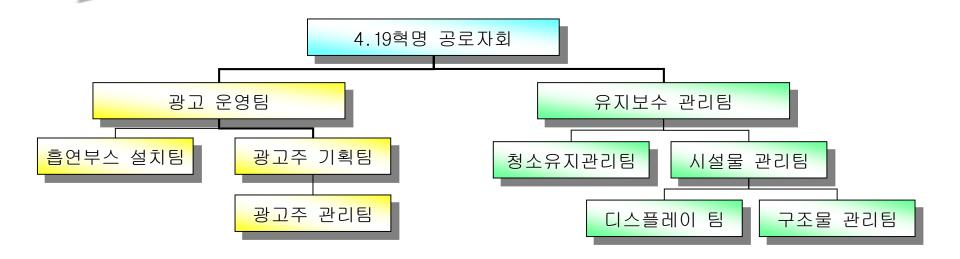
4.19혁명 공로자회가 운영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않음

다. 설치 운영 기간 : 시설물 완공일로부터 10년간 설치 운영

👢 관리 유지 방안

- 가. 관리 유지 책임 : 4.19혁명 공로자회
- 나. 보수유지
 - 매일 청소유지관리를 통하여 늘 괘적한 공간을 유지.
 - 월 2회 전담 수리 요원을 배정, 불편민원 접수 시 24시간내 민원해결 4.19혁명공로자회 관리전화번호 명기

12.운영 조직도



■ 유지 운영 전략

- 이원화 방식으로 전문성 향상
- 민원 발생시 24시간 민원처리 시스템
- 1일 점검시스템으로 쾌적한 시설물관리
- 불만 사항 상시 파악으로 개선 방향 모색

■ 팀별 분담사항

- 팀장 책임 하 모든 사항 관리
- 일일 주간 월간단위 유지보수일지 작성
- 문제 발생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
- 전체 운영 관리팀 회의시 개선방향 모색 제출 (월간)
- 각 팀별 관련 사업팀과 개별 접촉하여 전문성 확보

13.Art Smoking Booth 관련법규

●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8조(흡연구역의 설치 등) ① <u>제5조제1항</u>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다만<u>, 제5조제1항</u>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<u>, 제5조제1항</u>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·운영할 수 없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2. 해당 장소의 규모,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,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.
- 3.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다만,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, 크기, 설치방법,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●국민건강증진법

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
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

-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.<신설 2003.7.29, 2008.2.29, 2010.1.18>
-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·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1.6.7> <시행일 2012.12.8>